

## 01 남한산성 농막 설치 허가기준 운영 및 녹지조성 추진

 추진부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☎ 031-8008-5186

###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

#### 개선배경



-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('21.7.1. 시행)으로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세계유산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대규모 농막단지 형성으로 도립공원 및 문화재 훼손 우려
  - 남한산성 도립공원(공원자연환경지구) 내 농지 현황 : 184필지 182천㎡(성곽 내 142필지 108천㎡, 성곽 외 42필지 74천㎡)

#### 개선내용



개선 전	개선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('21.7.1. 시행)으로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세계유산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대규모 농막단지 형성으로 도립공원 및 문화재 훼손 우려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산성리(남한산성 성곽 내) : 농막 시설 설치 불가</li><li>- 산성리 외 지역(남한산성 성곽 밖) : 농막 시설 설치 제한적 허용*</li></ul>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●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“농막 설치 허가기준”을 마련('21. 6. 29.)하여 운영※ 허가기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주요내용 : 성 내 주요 농지 매입 (공원시설 지정 후 토지 수용) 후 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</li></ul></li></ul>

\* 오수처리시설, 정화조는 설치 불가. 외관은 무광 밤색 및 검회색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, 원색 사용은 지양

###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농막 설치 허가기준 마련 및 운영

- 2021. 06. 24. 농막 설치 허가기준 법률자문 의뢰 및 회신
  - 회신내용 : '재량의 일탈 및 남용 사항 없음' 고문변호사 3인 의견 일치
- 2021. 06. 28.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기준 고시알림(환경부)
- 2021. 06. 29. 농막 설치 허가기준 검토보고
- 2021. 07. 20. 농막 설치 허가기준 알림(센터→성남, 광주, 하남)
- 2022. 01. 14. 남한산성내 농막 1개소 축조신고 업무협의(광주→센터)
- 2022. 01. 27. 농막 축조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 심의
  - 의견수렴 결과 : 센터의견인 '허용 불가 처리' 적정

### 남한산성 성곽 내 녹지조성(자연환경 복원) 계획 수립 및 추진

- 2021. 09. 15. 남한산성 도립공원 녹지조성 계획 도지사 방침결재
  - 소요예산 : 241.6억원(토지매입 145, 녹지조성 96.6)
  - 사업기간 : 2023~2027년(5년간)
- 2021. 10. 25.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알림(예산담당관→센터)
  - 심사결과 : 조건부(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) 추진
- 2022. 03. 31.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(도의회 본회의) \*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2022. 05. 26. 공원시설 결정고시

### 향후계획 기본설계 및 토지매입 추진

### 개선효과



- 농막 설치 허가기준 마련 및 운영으로 세계유산 남한산성에 무분별한 농막 등 난개발 방지를 통해 역사 · 생태적인 경관 유지 및 일관된 인허가 처리 시행
- 남한산성 성곽 내 경관이 불량하고 농막 건축이 허용된 농지를 매입 후 녹지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역사 문화재 배후경관 개선 · 보전
- 녹지조성으로 자연생태 가치를 보존하고, 휴양 · 체험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, 생태관광 등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
## 02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

추진부서 경기도 주택정책과 ☎ 031-8008-4932

### 개선배경



- (규제지역) 물가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지정
  - (투기과열지구) 주택 투기가 성행(우려)하여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한 지역
  - (조정대상지역)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(우려) 되어 대응이 필요한 지역
- (적용규제)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대출 · 세제 · 전매제한 등 규제 적용
  -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 필요

### 개선내용



- 국토부 주거정책심의회의 의결로 경기도 일부 시 · 군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해제

#### [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현황 ]

구 분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
'22.11.14 이전	14개(12개 市) 지역 과천, 광명, 하남, 성남(분당, 수정), 수원, 안양, 안산(단원), 구리, 군포, 의왕, 용인(수지 · 기흥), 동탄2	28개(20개 市) 지역 과천, 광명, 하남, 성남, 구리, 안양(동안 · 만안), 의왕, 고양, 수원(팔달 · 영통 · 권선 · 장안 · 광교지구), 용인(수지 · 기흥 · 처인), 남양주, 화성, 동탄2, 군포, 부천, 안산, 시흥, 오산, 광주, 의정부, 김포
'22.11.14 이후	5개 지역 · 지구(4개 市) : 과천, 광명, 하남, 성남(분당, 수정)	

\* 일부 시 · 군의 세분화된 지역표기 생략



2022. 경기도 주택시장 동향분석(10회)

경기도 내 규제지역 해제 추진계획 수립

경기도 내 불합리한 규제지역 지정 해제 관련 국토부 건의(5회 이상)